제47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일시| 2008년 8월 14일(목) 13:30~16:00

|장소| 코리아나 호텔 스테이트룸 (7층)



제47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일시| 2008년 8월 14일(목) 13:30~16:00

|장소| 코리아나 호텔 스테이트룸 (7층)



행사일정

13:30-14:00 등록

14:00-14:10 사회 장 혜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인 사 말 김 태 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미혼모를 외면하는 한국의 현실 14:10-14:40 주제발표 1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2 미혼모 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

김 혜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40-15:50 지정토론 허 남 순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 상 순 (애란원 원장)

김 혜 선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팀장)

유 경 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Richard Boas (MD · Founder and Director, Unwed Korean

Mothers Support Network/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설립자 겸 디렉터)

Ellen Furnari (Consultant, Unwed Korean Mothers Support

Network/Former Vice President of Programs &

Strategy, Give2asia/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고문)

15:50-16:00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16:00 폐회

목 차

	주제발표 1 : 미혼모를 외면하는 한국의 현실	•1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발표 2 : 미혼모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	2
	김 혜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등	51
	허 남 순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 상 순 (애란원 원장)	
	김 혜 선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팀장)	
	유 경 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Richard Boas (MD·Founder and Director, Unwed Korean Mothers Suppo Network/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설립자 겸 디렉터)	rt
	Ellen Furnari (Consultant, Unwed Korean Mothers Support Network/Form Vice President of Programs & Strategy, Give2asia/한국미혼 지원 네트워크 고문)	

미혼모를 외면하는 한국의 현실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면서

선진국에서는 미혼모와 이들의 자녀는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이다.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면서 생활을 이끌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선진 국에서는 한부모지원 정책의 틀 안에서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혼모와 미혼모 자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약하기 때문에 미혼모 가족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미혼모 가족의 삶과 이들과 관련된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다. 한국사회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의 덫에 걸려 있으며, 미혼모가족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이들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미혼모 가족의 척박한 삶은 미혼모 자녀의 입양과 연결되어 있다. 미혼모에 대한 낙인이 있는 사회에서 미혼모는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또 원가족(family of orientation)은 미혼모의 미래를 위해서 입양을 선택한다. 선택이지만 상황으로 강요된 선택일 것이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혼모 자녀들은 국내로해외로 입양된다. 국외입양이 시작된 1954년부터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해외 입양은 전체 입양 중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최근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의 한국방문 및친부모 찾기에 대한 기사나 프로그램이 최근 빈번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출생한 곳과 언어, 문화, 인종이 상이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와 관련하여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한국을, 친부모를 찾아 나선다. 대개의 경우 이들의 어머니에게는 자녀 양육이 가능한 상황이 제공되지 못했다.

"좋은 차가 많이 다니고 높은 빌딩이 들어선 이처럼 부유한 나라가 왜 아직도 해외 입양을 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느 해외 입양인은 분노를 표현한다(동아일보 2004. 8월 9일). 여전히 우리사회는 미혼모 가족에게 냉정하다. 미혼모와 자녀의 척박한 삶이 이처럼 계속된다면, 양육을 포기한 미혼모의 자녀는 앞으로도 계속 국내로 해외로 입양될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미혼모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언급하면서 우리사회에서 미혼모

이슈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편견이 미혼모의 삶과 관련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려고 한다.

Ⅱ. 미혼모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

1. 저출산의 지속

미혼모를 둘러싼 주요한 사회환경 변화 중 하나는 출산율 감소와 저출산 지속이다. 한국사회는 1960년 이후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1.3명 이하의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지속되는 아주 낮은 수준의 출산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향후 사회부양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경제성장과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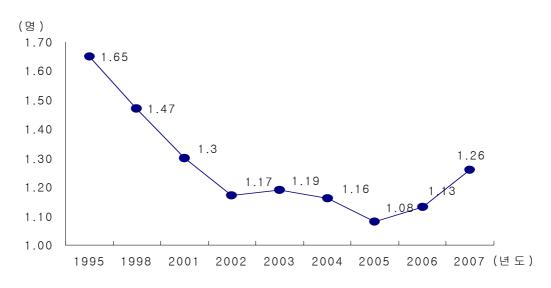
〈표 1〉 출생아 수 및 출산률

(단위: 명)

연도	출생아 수	합계출산률
1995	721,074	1.65
1998	642,972	1.47
2001	557,228	1.30
2002	494,625	1.17
2003	493,471	1.19
2004	476,052	1.16
2005	438,062	1.08
2006	451,514	1.13
2007	496,710	1.26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주 :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



〈그림 1〉 연도별 합계출산률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확산되고 있다. 정부 출산수준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06).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수단(pronatal policies)을 동원하고 있다. 출생순위가 높은 자녀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불임부부 시술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만혼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자 미혼남녀의 결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출산수준 개선을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까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미 태어나서관심을 기울이는 한국국민"인 미혼모 자녀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과 관련된정부의 모순적 행보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출산 수준의 지속은 혼외출생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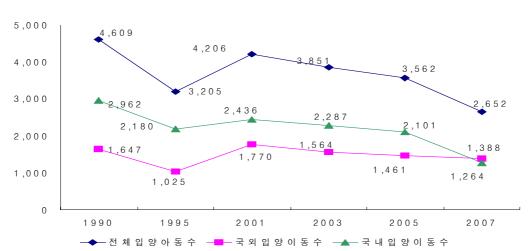
2. 해외 입양에 대한 각성

한국사회에서 미혼모 지원 정책과 입양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 인 한국에서 미혼모 지원정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입양 제도의 발달을 들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고아와 혼혈아를 위해 시작된 해외 입양 제도는 한국사회가 빈곤한 시기에는 빈곤가족 자녀를, 사회경제적 안정을 향유하는 80년대 이후 시기에는 미혼모 자녀를 위한 사회적 대응책 역할을 해왔다. 한국전쟁과 빈곤의

역사 속에서 입양제도는 빠르게 제도화되었고 이런 이유로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복지 정책이 개발될 기회가 제한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와중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입양제도화 관련하여 촉매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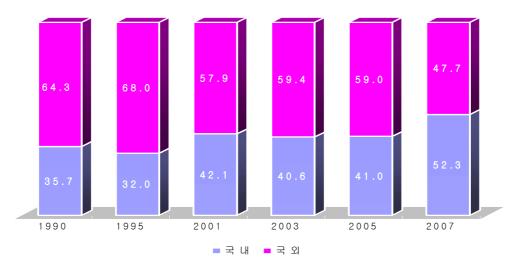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외 입양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반성이 시작되었다 (위클리조선, 2008년 1월 2일). 더 이상 한국은 50-60년대의 빈곤 국가가 아닌데도, 한국아동의 해외입양은 계속되었다. 국내외 비판에 직면하여 9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시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 국내 입양을 먼저 시도하게 하였다. 해외 입양에 대한 정부의 각성은 국가적 자존심과 관련된 것이다. 이후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하려는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관련 예산이 책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7년 한국은, 세계에서 외국입양아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미국에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에이어 4번째로 많은 입양아를 보내고 있다. "좋은 차와 높은 빌딩이 많은" 잘 사는 나라에서 자국민 부양 정책이 미흡하여 아직도 해외입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과 각성은 미혼모 가족 지원 정책 미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2008), 아동입양기관 및 입양아동수에서 재구성

〈그림 2〉입양아동수: 1990~2007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2008), 아동입양기관 및 입양아동수에서 재구성

〈그림 3〉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의 구성비: 1990~2007

3. 미혼모의 태도 변화

한국사회에서 미혼모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최근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편견에 맞서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시설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직 미혼모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미혼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요구에 정부가 귀 기울이고 있고, 양육 미혼모의 증가는 향후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표 2〉 연도별 미혼모자 지원 시설 개소수

(단위: 개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미혼모자시설	10	12	18	20	25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5	9	9	16	15

<출처: 여성가족부(2008), 한부모지원사업안내, pp.10>

〈표 3〉 미혼모자 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연도	계	당해연도 입소자수	당해연도 퇴소자수	연도말 수용인원	연입소 인원
1996	8	1,028	1,007	174	1,181
1997	8	1,162	1,133	203	1,336
1998	8	1,526	1,481	248	1,729
1999	8	1,435	1,450	233	1,683
2000	8	1,273	1,293	213	1,506
2001	8	1,588	1,585	216	1,801
2002	8	1,673	1,648	242	1,890
2003	10	1,940	1,942	304	2,246
2004	11	1,620	1,626	293	1,919
2005	18	2,123	2,093	349	2,442
2006	20	1,920	1,903	340	2,243
2007	25	2,161	2,099	405	2,504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가족 통계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2008), 아동입양기관 및 입양아동수에서 재구성

Ⅲ. 미혼모 얼마나 되는가?

미혼모 지원 정책은 미혼모 통계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아직 한국에는 아직 미혼모에 대한 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사회적 편견은 미혼모 통계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미혼모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 또정부 예산으로 수행되는 전국 수준의 통계는 조사 대상에서 미혼모나 혼외출생아를 제외시키거나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미혼모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미혼모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수집된 것이다. 시설을 찾아간 미혼모 일부에 대한 것이다. 시설 및 지원기관을 접촉하지 않은 미혼모가 얼마나되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다.

현재 미혼모 규모와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이다. 한부모가정 중 가장의 결혼지위가 미혼인 경우가 미혼모가정 에 해당된다. 미혼모 가정의 수는 1995년 90,986가구, 2000년 117,764가구, 2005년 133,234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미혼부 가정을 추가하면, 수치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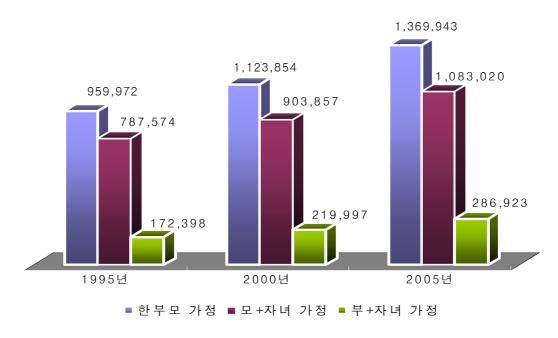
모자녀가정(single-mother households) 중 미혼모 가정의 비율이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의 비율은 1995년 11.6%, 2000년 13%, 2005년 12.3%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 는데, 그 이유는 모자녀가정 중 유배우와 이혼여성의 비율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표 4〉년도별 결혼지위별 한부모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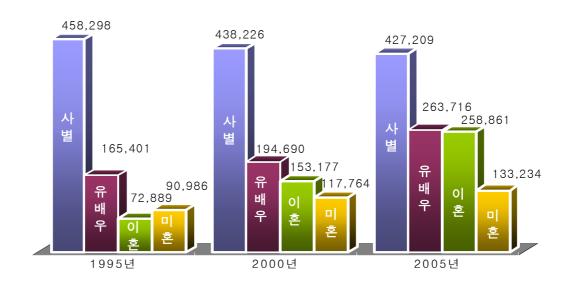
(단위: 가구)

연도	구분	가구전체	한부모 가정	모+자녀 가정	부+자녀 가정
	가구계	15,887,128	1,369,943	1,083,020	286,923
	사 별	1,832,308	501,095	427,209	73,886
2005년	유배우	11,120,410	327,864	263,716	64,148
	이 혼	904,154	398,532	258,861	139,671
	미혼	2,030,256	142,452	133,234	9,218
	가구계	14,311,807	1,123,854	903,857	219,997
	사 별	1,561,841	502,284	438,226	64,058
2000년	유배우	10,739,411	252,917	194,690	58,227
	이 혼	552,720	245,987	153,177	92,810
	미혼	1,457,155	122,666	117,764	4,902
	가구계	12,958,181	959,972	787,574	172,398
	사 별	1,407,557	526,320	458,298	68,022
1995년	유배우	10,060,042	216,067	165,401	50,666
	이 혼	277,798	123,969	72,889	51,080
	미혼	1,212,746	93,616	90,986	2,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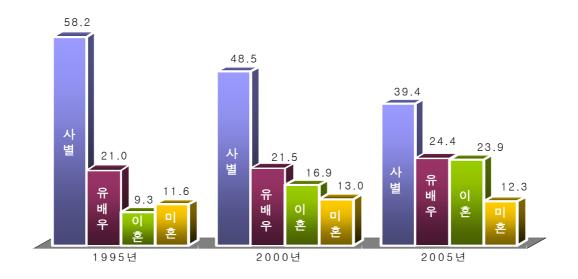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각 년도별 인구센서스.



〈그림 4〉전체 한부모가정과 가장의 성별 한부모가정



〈그림 5〉 모+자녀 가정 결혼지위별 가구수



〈그림 6〉 모+자녀 가정 가장의 결혼지위별 비율

미혼모 규모를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통계는 혼외출생아 수이다. 2006년 통계청인구동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총출생아 중에서 혼인외의 자는 6,863명으로 전체의 1.5%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혼외출생아 비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아주 낮은 것이다. 외국의 혼외출생아 비율(non-marital birth rate)을 살펴보면 아이슬랜드는 60%를 넘고 있고, 스웨덴, 노르웨이의 북유럽 국가들은 50%를 넘고 있다. 미국은 30%대이고, 영국은 40% 초반, 프랑스는 50%에 접근하고 있다. 한국과 더불어 일본의 혼외출생아 비율은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혼외출산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동거커플의 증가로 이해되고 있다. 북유럽 등 유럽국가에서 혼외 출산아 대다수는 미혼모보다는 동거에서 출생한 것이 다(Rothenbacher 1995).

〈표 5〉 혼인상태별 출생아 수

(단위: 명)

연도	총계	혼인중의 자	혼인외의 자	미상
2006년	451,514	442,038	6,863	2,613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표 6〉 혼인상태별 출생 구성비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혼인중의 자	99.1	99.0	98.9	98.8	98.7	98.5	98.5
혼인외의 자	0.9	1.0	1.1	1.3	1.3	1.5	1.5

출처: 통계청, 2006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주 : 미상제외

〈표 7〉OECD 주요국과 비교(총 출생아 수 대비 혼인외의 자의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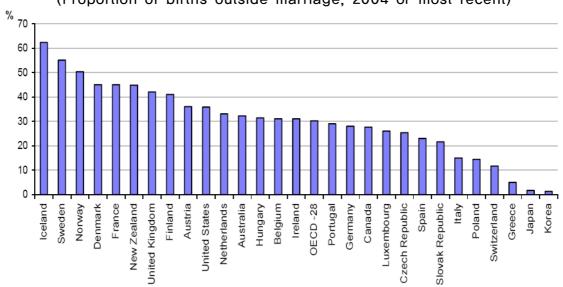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2001	1.0	1.7	33.5	40.1	44.7	9.9	25.0
2002	1.1	1.9	34.0	40.6	45.2	10.9	26.1
2003	1.3	1.9	34.6	41.5	46.2	13.0	27.0
2004	1.3	2.0	35.8	42.3	47.4	14.9e	27.9
2005	1.5	2.0	36.8p	42.9	48.4	13.8e	29.2
2006	1.5	_	_	_	_	_	_

출처: 통계청, 2006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주 : p는 잠정치, e는 추정치

(Proportion of births outside marriage, 2004 or most recent)



출처: "OECD Family database"<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주 :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는 2003년 자료이며, 캐나다,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일 본,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어 및 스위스는 2002년 자료임.

〈그림 7〉 국가별 혼외출산비율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의 수준과 혼외출생아율(non-marital brith rate)의 상관관계를 논의하면서 출산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 혼외출산율이 낮은 경 향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태리, 그리스, 일본의 예를 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 하면 한국의 경우 대다수 출생이 결혼제도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낮은 혼외출생아율은 혼외관계에서 임신을 한 여성이나 혼인외 출산 을 한 여성에게 극심한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낮은 혼외출생아율이 보여주는 것 같이 대다수 한국 사람의 성적인 활동 (sexual behaviors)이 일상적 삶과 별 마찰 없이 대체로 결혼제도 내에서 순조롭게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젊은이 사이에서 성의 자유화(sexual liberalization)가 진 행되고 있는데, 이들의 성적활동은 종종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임신으로 이어 지곤 한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실시된 인공임신중절실태 조사는 의료기 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총시술건수 342.433건 중 미혼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42%를 구성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기혼자보다 미혼자 집단에서 더 높아 인 구 1,000명당 31.6명으로 기혼자 28.6명을 앞지르고 있다(고려대학교·보건복지부 2005). 낮은 혼외출생아율이 유지되는 이면에 혼외 임신부와 미혼모의 삶이 많은 어 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Ⅳ. 미혼모가 당면한 현실: 변화와 정체

1. 양육 미혼모 증가

미혼모와 관련된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양육 미혼모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혼모를 지원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5년도 허남순 교수팀의 연구는 2차례에 걸친 조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조사는 미혼모 시설 11개소에 입소한 2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16개 미혼 모보호시설의 1,12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허남순외 2005).

출산후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허남순 교수팀의 1, 2차 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인다. 1차조사에서는 미혼모 본인이 부양하겠다는 비율이 31.7%이지만 2차조사에서는 15.3%, 미혼부 혹은 미혼부모가 양육하겠다는 부분을 고려해도 17.4%이다. 그런데, 2차조사에서 미혼모 양육 비율이 낮게 나온 대신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못한 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47.7%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집단의 비율이높게 나타났다(허남순외 2005). 양육의사가 있는 미혼모 비율은 한국여성개발원의 1984년 자료에서 나타난 5.8%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자료: 보건복지부. 2007, 「요보호아동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그림 8〉 요보호 아동 중 미혼모 자녀

미혼모자를 지원하는 시설인 애란원 관계자에 따르면 2002년에는 해당 시설에 있는 미혼모 중 양육의사가 있는 경우는 15%였으나 2007년에는 65% 이상에 도달한다 (한겨레, 2007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입양아동 중 미혼모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여, 1990년대 80%에서 2000년 이후 60% 대로 감소하였다. 또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 중 미혼모 아동의 비율이 2001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가설수준에서 양육미혼모 증가로 생각할 수 있다.

2. 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미혼모에 사회인구학적 배경 역시 미혼모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파악된다. 연령분포에 있어서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2005년 허남순 교수팀 조사에서는 10대 연령층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6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10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홀트아동복지회에 의하면 상담을 의뢰하는 미혼모 연령층이 변화한다고 한다(세계일보 2005년 8월 23일). 이들에 의하면 1996년 10대는 63.8%, 2004년 43.9%로 감소하지만 20대는 33.7%에서 52.1%로 증가한다. 이 기관에서 접촉하는 미혼모의 경우 20대 미혼모 증가가 나타나고 아동 양육을 희망하는 양육 미혼모 증가하고 있다.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파악한 상담을 의뢰한 미혼모를 중심으로 파악한 자료에서 나타난연령분포는 21세 이상의 비율이 증가한다(허남순외 2005).1) 2002년도 20세 이하는 58.3%, 21세 이상은 41.7%였지만 2004년도에는 20세 이하는 39.3%, 21세 이상은 60.7%로 변화한다. 미혼모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 2005년도 자료에서는 20세 이하41.8%, 21세 이상은 58.2%로 입양기관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난다(허남순외 2005). 대한사회복지회의 2005년과 2006년도 입소자 1,066명의 경우도 20세 미만이 39.6%를 구성하고 있어(대한사회복지회 2007), 입양기관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들 간에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미혼모의 학력 변화를 보면 중학교 이하의 비율은 1980년대 46%, 1990년대 25%, 2000년대 15.1%이고, 고등학교는 각각 48.1%, 66.1%, 65.7%, 대학이상은 각각 6.0%, 8.8%, 19.2%로 증가하고 있다 (김유경외 2006). 2005년도 미혼모 보호시설 대상 자료에서는 중졸 이하 16.3%, 고등학교 66%, 대학입학 이상 17.7%로 나타나(허남순외 2005), 두 가지 조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¹⁾ 허남순 교수의 미혼모 통계는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의 미혼모 상담부서 내부통계에 근거한 것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는 1984년 한국여성개발 원의「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1998년 김영숙의「미혼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2002 년 이시백 교수 등이 연구한「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보건복지부)에 근거한 것이다.

3. 미혼모가 필요로 하는 것

가, 경제적 지원

미혼모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이다. 2005년도 11개 기관 228명을 대상으로 한 허남순 교수팀 조사(2005)에 의하면 미혼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이 가장 많아 43.8%이고 그다음이 가족의 이해였다. 아동양육과 관련하 여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대상자 73%가 응답했고, 양육시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경제적 지원이 가족의 이해를 앞섰다 (허남순외 2005). 아기를 양육 할 수 없는 이유로 '경제적 능력부족'이 42.0%로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20.4%보다 앞섰다. 재정적 지원이 있으면 아동양육을 하겠다는 비율은 37.7%로 나타났다. (허남 순외 2005). 경제적 직업활동을 하던 여성도 출산이후 어린아이 양육과 관련하여 직 업활동에 제한이 많이 때문에 이들 역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나. 주위의 시선

경제적 어려움에 버금하여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고충은 사회적 편견이다. 미혼모들 의 경험을 보면, 임신이후 가족 등 주위사람들은 낙태나 입양을 권유한다(최양자ㆍ김 귀분 2004). 미혼모가 출산과 양육을 결심하면 가족들은 외면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 위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외톨이가 되는 것이다.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적 지 원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 각으로 인하여 가족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한다.

가족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 가족의 '이해를 받고 싶다' 48.6%, '숨기고 싶다' 31.0%로 나타났다(허남순외 2005). 1996년 부녀복지회 조사에 의하면 미혼모에 대한 시각은 '죄인시하다' 39.5%, '냉대하다' 35.1%, '무관심' 14.4%로 나타났고, 2002년 정 용순 연구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 23.8%, '부정적' 62.5%로 전체 의 86.3%가 부정적이었다(김유경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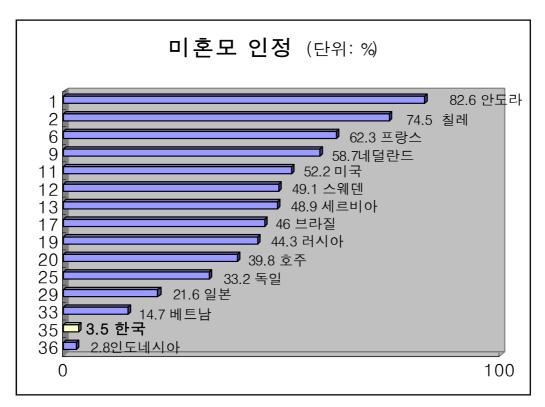
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홀트아동복지회의 도움을 받은 한 미혼모는 자신을 "혼외자를 낳은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사람들"로 보는 한국사회에서 아빠 없이 아기를 키우는 것은 엄마의 욕심이라고 생각하며 양육을 포기한다(세계일보 2005년 8월 4일). 미혼모는 "몸을 함부로굴린 여성"이라는 주위의 차별적 시선 때문에 이들의 삶은 힘겹다(천혜정·배선회 2001; 일다 2006년 3월 28일). 아버지의 이해를 얻지 못해서, 형제자매의 결혼에 지장을 줄까봐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도 한다(문화일보, 2004년 3월 16일. 미혼모들의 새봄).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이들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미혼모는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미혼모의 원가족(family of orientation)은 미혼모의 미래를 위해서 입양을 고려하고 선택한다(문화일보. 2004년 3월 16일).

청소년 미혼모들의 상황도 심각한데,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임신사실이 주위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다(홍순혜외 2007).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원한 조사에 의하면 미혼모 시설 가주 청소년 미혼모 63명 중 71.4%가 임신당시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다(홍순혜외 2007). 63명의 청소년 중 87.6%는 학업지속을 원하였다. 조사대상 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 32%가 학생의 임신·출산을 징계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학생의 임신 사실을 알면 교사의 27.8%와 학교사회복지사의 20.0%가 자퇴시키겠다고 응답하였다(홍순혜외 2007). 이런 이유로 10대 청소년 미혼모들은 임신을 감추며 지내다 출산을 앞둔 마지막 단계에 미혼자 지원기관을 찾는다(오마이뉴스 2005년 3월 17일). 청소년 미혼모들은 미혼모 쉼터에 도달하기까지 주위의 비난에 두려워하고, 출산과 관련된 모든 고통과 짐을 홀로 감당하고, 마침내는 자신의 아이를 떠나보내는 고통도 혼자 겪어야 한다(정지민외 2003).

한국사회에서 미혼모의 편견이 강하다는 점은 국제비교조사에서도 나타나다. 세계 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혼모를 인정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하여, 전체 36개국 중 35위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2007) 인터넷판[세계 가치관 조사(2005~2007)]에서 재인용

〈그림 9〉가치관 국제비교 : 미혼모 인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지원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한다. 선진국의 한부모가족 연구를 보면, 한부모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는 집단이 미혼모 집단(never-married single mothers)이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편견은 한국 미혼모 가족의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으로 고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혼모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한국에서 출산을 앞둔 미혼의 입장에서 원가족의 도움은 절실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을 가장 먼저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많은 미혼모들이 임신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지내다 출산에 임박하여 미혼모 지원기관을 찾는다. 이것은 직업이 있는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나 출산을 직장에 알리기도 어렵고 사실이 알려졌을 때 직장을 계속 다니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직업이 있는 여성들도 출산에 즈음하여 지원기관에 도움을 청하게 된다.

가족의 지원이 한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사례가 러시아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Lokshin외 2000). 러시아에 경제적 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이전 제공되었던 한부모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원이 감소 및 중단되었다. 이후 이들의 생존 전략 중 하나는 한부모의 원가족(family of orientation)과 동거하는 것이다. 원가족과의 동거는 이들에 게 큰 도움이 된다. 자녀 양육 지원, 생활비 공동 분담, 그리고 가족의 수용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대한사회복지회는 2007년 블루레터 캠페인을 펼치며, "미혼모를 위한 대중인식 개 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7년 8월 13일). 미혼모가 처한 어려운 현실 을 사람들에게 알려 후원 기금을 모금하고 미혼모 문제 를공론화하려는 것이 캠페인 의 목적이다. 이러한 노력은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 미혼모에게 절실한 것은 따뜻한 시선과 자립에 대한 배려이다.

Ⅵ. 마무리 하며

본 원고에서는 미혼모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사회적 변화를 검토하면서 미혼모 이 슈의 위치를 점검하였다. 한국의 혼외출생아율은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미혼모나 그 들의 자녀의 삶은 힘겹다. 저출산의 지속, 해외 입양에 대한 각성, 양육미혼모의 증가 는 한국사회에서 미혼모 이슈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출산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의 기저에는 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을 "적절한 가족"으로 여기는 관점이 깔려 있다. "태 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정책은 이미 태어나서 도움을 애타게 바라는 "이미 태어난 아기, 미혼모 자녀"는 외면하고 있다.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덕적 기준"은 미혼모 가정에게는 폭력적이다.

또 해외 입양을 줄이려는 대안으로 국내 입양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입양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미혼모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보다 훨씬 더 많다. 친어머 니가 키우는 것보다 다른 부모가 키우는 것에 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역시 결혼 제도 내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관점이 깔려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 지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전국 출산력 조사에서도 기혼자 중심으로 수집되고 있다. 미혼모 출산력을 조사하는데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논란"을 피하 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지원한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에서 미혼자들의 낙태와 관련된 통계가 발표되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다. 미혼자의 인공 임신중절율이 기혼자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한 상황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에 이 사 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우리사회가 "부도덕하게"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남들이 덮어두 려는 현실을 캐내는 용기가 "도덕"의 시작이다. 미혼모 가족을 손가락질하고 외면하 는 것은 "도덕"이 아니다. 이들의 문제에 솔직하게 접근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도덕" 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고려대학교 · 보건복지부. 2005.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관계부처 합동.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김유경·조애저·노충래. 2006. 「미혼모의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사회복지회. 2007. 「미혼모 시설 입소자 조사 통계 자료」.

정지민외. 2003. 『별을 보내다』 대한사회복지회 엮음. 리즈앤북.

천혜정·배선희·송말희·송현애·전길양. 2002. "미혼모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10 대 미혼모의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제 20권 4호 (p3, p9~p11)

최양자·김귀분. 2004. "미혼모 경험"『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0권 제4호, 2004년 12월 (p333~p337)

안순덕외.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허남순·노충래·허소영·조수민. 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홍순혜·김혜래·이혜원·변귀연·정재훈·이상희. 2007.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 조사」국가인권위원회.

일간지 및 주간지

동아일보. 2004. 8월 9일. "세계 한인입양인대회 폐막/어머니 나라 뜨거운 사람 품고 갑니다." 문화일보. 2004년 3월 16일. "미혼모들의 새봄".

세계일보. 2005년8월 23일. "벼랑끝 내몰리는 미혼모들/'낳았지만 능력없어,' 미혼모들 눈물." 오마이뉴스. 2005년 3월 17일. "혼전 임신 책임은 여자만 져야 하나."

위클리조선. 2008. 1. 2. "입양, 생각해보셨습니까?"

일다. 2006년 3월 28일. "비혼모의 인권은 어디에."

한겨레신문. 2007년 8월 13일. "사회적 편견이 십대 미혼모를 거리로 내몬다."

______. 2007년 8월 14일. "애타는 미혼모들, '내아이 키우고 싶은데.'"

외국문헌

Lokshin, Michael, Kathleen Mullan Harris, and Barry Popkin. 2000. "Single Mothers in Russia: Household Stragegies for Coping with Poverty."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The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Poverty and Human Resourcez.

Rothenbacher, Franz. 1995. "Household and Family Trends in Europe: from Convergence to Divergence." Eurodata Newsletter No. 1 Spring.

◈ 주제발표 2 ◈

미혼모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

김 혜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는 말

임신은 여성들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동반하며 어머니라는 모성적 지위를 새롭 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여성의 생애사건으로 이해된다. 통상 기혼 여성의 임신 과 출산은 결혼과 더불어 가족구성의 주요 기제라는 점에서 가임기 여성에게는 건강 한 출산을 기원하는 친지의 격려와 축복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2000년 이후에 는 저출산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출산은 비단 가족을 넘어 전사회적인 관심사로 부상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제도적인 가족관계 틀 내에서만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인 혼인관계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이탈된 여성 의 임신과 출산은 여전히 상당한 문화적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미혼의 신분으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에게는 '어머니'로서의 권리와 의무보다는 합법화되지 않은 관계에서 자녀를 임신한 '일탈적 존재'로 규정됨에 따라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을 공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양육의 연속적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특정의 각 단계에서 심각한 선택과 결정을 강요받고 받는 것이 사실이다.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의 출산을 백안시해온 사회일수록 미혼모의 존재 자체 는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경우 이들에 대한 공신력있는 통계자 료는 구하기 어렵다. 대략 미혼모 출산은 연간 1만 2360건으로 추산되지만, 이러한 수치의 정확한 근거나 미혼모들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혼모의 규모는 미혼모 관련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수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 수를 통해 그 증감추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뿐이다.

적어도 기관에 입소한 여성의 수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성 규범의 변화와 더불어 성적욕망에 관대해지는 문화변동을 쉽사리 목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미혼여성들의 혼전 성경험과 임신비율은 점차 높아졌을 것 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세기의 전환과 더불어 확산된 정보통신매체는 자유로운 교제와 만남의 통로로 활용되면서 성적 욕망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개방적인 서구 성문화와의 빠른 동조화현상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그 결과 성 개 방과 상품화는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생경하거나 이질적인 풍경이 아니다. 실제로 전 국 20개 대학의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 '혼전동거'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74%에 달하며(중앙일보, 2008년 7월 27일자), 중·고등학생 가운데 여학생의 70%, 남학생의 65%이상에서도 '사랑하는 사이라면 혼전 성관계도 가능하다'라고 응 답(굿데이, 2003년 9월 17일; 허남순 외, 2006:3에서 재인용)하는가 하면, 전국가족조 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0-30대 연령층에서는 '결혼하지 않고도 성관계할 수 있 다'는 응답율이 75%를 상회하고 있다(장혜경 외, 2003:114).

한국사회의 이러한 문화변동은 과거에 비해 혼전 성경험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전성경험이 임신과 출산, 나 아가 양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여전히 혼전성관계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남녀의 문제가 아닌 임신·출산한 여성만을 분리, 배제하여 미혼모라는 특정의 이름으로 이 들을 구분 짓거나 배제하고 있다. 그 결과 미혼모 아동의 70% 이상은 이들의 양육포 기로 해외 입양되거나 보호시설로 보내지고 있다. 요컨대 혼전관계를 용인하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 결혼관계에 진입하지 않은 미혼여성의 자녀출산과 양육에 관해서는 사회적 인정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과 자녀출산을 겪어야 하는 미혼 여성들은 자신에 대 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하는데, 특히 미성년이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은 20 대 초반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같은 사회적 비난과 더불어 누군가의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한 산전ㆍ후 관리조차 받기 어렵다. 따라서 자녀출산 후 미혼모 스스로가 양육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들의 자녀양육 과정에는 수많은 난관 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혼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의 근심과 우려가 뒤따르고 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많은 미혼 여성들로 하여금 임신을 인지 한 순간부터 낙태에 대한 강한 유혹과 함께 자녀출산을 회피하거나 출산 후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성차별적인 노동시 장에서는 유자녀 여성의 노동시장진입이 대단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자녀 돌봄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은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양육미혼모들 이 일과 자녀양육의 병행은 몇갑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한국미혼모의 특성과 이들에 대한 사회지원체계를 간략히 살펴보고,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몇 가지 방향을 모색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0년 이후 변화하는 미혼모실태의 특징적 양상을 살펴보 고, 현재의 미혼모관련 정책이 미혼모의 변화양상과 욕구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검토 함으로써 미혼부·모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 를 통해 미혼의 상태에서 홀로 임신과 출산, 나아가 자녀양육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통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며 평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서 감당해온 한국의 미혼모들 이 앞으로는 기꺼이 사회와 더불어 그 짐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사회 로 거듭나는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Ⅱ. 미혼모 실태와 특징적 변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미혼모는 미혼의 상태에서 혼전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 과 별거, 이혼, 사별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경우가 포함되는 것이 지만(NASW, Encyclopedia of Social Worker, 1965; 보건복지부, 1999:30), 법률상으로는 정당한 혼인관계에 의하지 않고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분만한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출산하지 않은 임산부는 미혼모의 범주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미혼여성의 임신중절율이 높은 우리현실에서 미혼모의 규모와 의미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미혼여성의 임신율이나 미혼모의 모집단이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가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여성의 수를 양산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낙태 건수 35만 건 가운데 미혼여성의 낙태건수는 약 14 만 건으로 전체 낙태건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

혼인관계에 진입하지 않은 여성의 자녀출산을 용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백안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미혼모는 그 존재 자체가 쉽게 노출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미혼모의 추이만을 살펴보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수는 1991년 1,029명(시설 10개소), 1995년 990명(9개소), 2000 년 1,273명(8개소), 2002년 1,673명(8개소), 2005년 2,123명(14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입양아동 역시 91년 3,438명에서 95년 3,205명, 2000년 4,046명, 2002년 4,059명, 2005년 3,562명 등으로 연간 3000여명에서 4000명에 이르며, 2004년 해외입양아 가운데 미혼모 아동은 99.0%, 요보호 아동가운데 미혼모 아동은 42.6%에 달하고 있다. 다만 2007년의 경우 요보호 아동 가운데 미혼모 아동은 약 27.3%인 2,417명으로 감소세를 보여주는데, 이는 최근 들어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 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의 발표자료(2006년)에 따르면, 한국의 미혼모 청 소년은 5천명에서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미혼모 가운데 청소년의 비 중은 93년 32.4%에서 2000년 55.1%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만 15세 이하 의 미혼모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혼모의 저연령화와 더불어 미혼모 연령 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되고 있다. 2005년 여성가족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가운데 26-30세의 비율이 14.3%, 30세 이상이 6.7%로 나타났 다. 또한 미혼모의 연령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의 학력도 과거에 비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예컨대 1980년대 조사에 의하면, 중학교 이하 46%, 고등학교 48.1%, 대학 6.0% 에서 2000년대에는 중학교 이하 15.1%, 고등학교 이하 65.7%, 대학이상 19.2%에 달하 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84),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에서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 가 35.3%, 고졸 47%, 대재이상 17.7%로 나타나 점차 교육수준이 상향 이동됨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05).

뿐만 아니라 80-90년대 까지 미혼모의 1/3가량이 구조적인 결손가족에서 성장했다 는 조사결과에 비해 최근에 와서는 급속한 가족변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위 결손 가족에 해당하는 미혼모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혼 모는 특정의 연령과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가족문제로 인한 비행의 결과 로 단순 귀착시키기는 어렵다. 즉, 90년대 이후 미혼모는 특정한 가족형태나 계층에 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로 구성되며(한영주, 1998), 주로 낮은 교육수준이나 교육기회의 박탈과 함께 성에 대한 무지, 특정한 가족 요인 등에 의해 미혼모가 발생하였던 과거와는 달리(김정심, 1988, 배미영, 2000), 근 자에 와서는 개인의 연령, 사회적 배경, 성장환경, 때로는 우발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에 의해 발생되는 복합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혼모 규모의 절대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 지만, 적어도 성적욕망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혼여 성의 임신중절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지만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율이 세계적으 로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본다면(은기수, 권태환, 2002), 적어도 임신 이나 낙태를 경험한 미혼모는 크게 증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낙태를 선택하 지 않았거나 이미 낙태의 시기를 놓쳐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와 출산 후 자녀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 역시 입양아동의 수적 증가를 통해 완만하게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 과거에 비해 낙태의 시기를 놓쳐 어쩔 수 없이 자녀출산하게 되었다고 답한 미혼모의 비율(28.8%)과 유사한 비율로 '아기를 낳기 위해' 출산하였다는 미혼모의 응답이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는 출산 후 아기문제에 대해서는 68.3%가 입양을, 31.7%가 양육을 선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 중 37.7%가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를 양육할 의사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모의 인식 및 가치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여성가족 부, 2005). 요컨대 자신의 자발적 선택에 따르지 않았다할지라도 미혼모가 된 현실에 서 점차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 등 최근의 가족변화에 따라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호적에 아동을 입적시킬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등의 사회환경 변화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이재정, 2003).

〈표 1〉 입소미혼모 가운데 양육미혼모의 비율

(단위: 명, %)

	1998	1999	2000	2001	2005*
미혼모대비 양육미혼모비율	7.2(105)	8.3(123)	8.6(124)	11.0(172)	31.7
10대 비율	22.9(24)	35.7(44)	27.4(34)	40.7(70)	

자료: 강영실, "미혼양육모 현황"; 서울시 여성복지연합회,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87 에서 재인용

한편, 이러한 긍정적 변화와는 달리 미혼모에 대한 우려를 높여주는 변화양상 또한 발견된다. 무엇보다 미혼모의 임신이 일회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미혼의 임신출산을 반복하는 미혼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거임신경험이 있는 미혼모의 비율은 1984년의 경우 15.9%에서 2005년에는 28.6%로 증가하고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미혼모의 인공임신중절의 노출가능성을 함축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이들의 사회복귀 및 자립의 어려움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여성가족부, 2005).

미혼모 특히 어린 미혼모의 경우에는 임신으로 인한 학업중단이나 불투명한 진로 및 경제적 어려움의 악순환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른 나이의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재임신의 가능성이 높아 추후 출산터울이 짧은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0대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¹⁾(Gillmore, M. R. Lewis, S.T., & Lohr, M. J., 1997:536; 김만지, 2004:6). 청소년 미혼모에 관한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만 19세이하 여성의 출산아동은 17,3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청소녀의 자녀출산이 3500여건에 이름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7).

Ⅲ. 미혼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사회에서 미혼모와 관련된 조항들은 민법을 위시하여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입양특례법, 모자보건법, 청소년

^{*:}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

¹⁾ 예컨대 미국의 NCHS(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의 통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13%가 임신을 하며 이 가운데 21%가 재임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영실, 2000).

기본법 등에 걸쳐져 있다. 대체로 민법에서는 법률혼주의에 입각한 결혼과 출생아동 의 법적지위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재정적 지원이나 서비스 실시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그리고 2007년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을 양 육하는 모부자 가족과 조부모들 가운데 저소득층을 보호대상자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자격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 례법은 국내외 입양서비스의 기본법으로 모든 입양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사업법은 미혼모를 보호 지원하는 사회복지상담, 직업보도 및 모자복지는 물론 사회 복지관 운영의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의료보호법에서는 미혼모 보호시설 수용자에게 의료혜택제공 등에 관한 지침 등이 규정되고 있다(도미향, 2001).

미혼모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2007년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이다. 이는 저소득의 한부모, 미혼모, 조손가족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가운데 양육 미혼모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하여 양육미혼모 자립지원 시설인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추가 설치 및 운영은 물론 미혼모자시설의 출산 직후 미혼모에 대한 자녀 양육지원 사업 등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 자 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중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을 지원하 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연혁을 미혼가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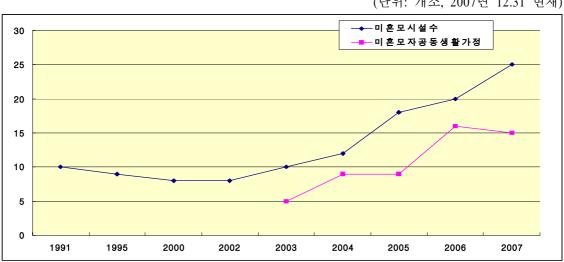
〈표 2〉한부모가족지원사업

연도	추진내용
1989	- 모자복지법 제정(4.1), 시행(7.1) ·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 아동교육비, 아동부양비 복지급여 지급 · 생업자금 등 복지자금 대여 ·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모자복지시설 규정
2003	-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시범 운영
2005	 아동양육비지원금액 월 50,000원으로 지급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모·부자복지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지방재정 분권화 정책에 따라 시설 운영비 지방이양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2006	- 모·부자복지법 개정(12.28) · 미혼모·부가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복지급여 추가 지원 ·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변경하여 그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 강화 ·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여 아동양육 등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자 가정, 모·부자가정 및 미혼모가정을 지원

연도	추진내용
2007	-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10.17) ·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 ·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 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에서 22세미만으로 확대 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2008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 업무가 여성부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출처: 여성가족부(2008), 한부모지원사업안내:.5~7에서 일부내용 발췌 후 재구성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 19조 5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 미혼여성이 임신하였거나 출산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로는 미혼모자시설과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미혼모자시설은 1991년 10개소, 2000년 8개소, 2003년 10개소, 2005년 18개소로 증가하여 현재에는 25개소에 달하며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 2003년 5개소가 문을 연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현재 15개소이다. 그 결과 이러한 시설 이용자 수는 90년대 1000여명에 불과한 것이 현재는 연 2000명을 상회하고 있다(보건복자가족부, 2008).



(단위: 개소, 2007년 12.31 현재)

-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 2003년 처음으로 개소.
- ** 자료; 여성가족부(2008), 「한부모지원사업안내」, 10p

〈그림 1〉 연도별 시설 수 변화 추이

이들 시설의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미혼모 관련시설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 우에 다소 집중 분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충남, 전북,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미혼모자시설이 한군데도 없으며,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은 대전, 충북, 전북, 경북의 지역에서는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혼모자시설의 전체 정원은 649명으로 시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50-15명 선을 적정규모로 볼 수 있는데, 연평균 미혼모자시설을 이용한 여성의 수가 2000명에 달하고 있음은 시설대비 수요가 결코 충분하지 않음을 말해주 는 것이다.

요컨대 미혼모자시설의 경우 보호기간 1년, 필요한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설운영에 있어 수요대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미혼모 자공동생활가정은 이들 미혼모자시설 이용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 혼모자시설에 비해 유동적인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연평균 이용자 수는 자녀 포함하여 174명 내외를 벗어날 수 없는데, 이는 미혼모자시설 연평균 입소 자수 가운데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를 어림잡아 1/3로 계산할 경우 수요대비 1/5 가 량에 불과하다.

〈표 3〉 시설의 지역적 분포

(2007. 12.31현재/ 단위: 개소, 명)

											`			- '		. 11	,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혼모자 시설	25	5	2	1	1	2	2	1	5	1	1			2	1		1
정원				50	29	50	59	15	105	40	50			17	10		35
미혼모공동 생활가정	15	2	1	1	1	1		1	3	1		1		1		1	1
정원	174	38	10	10	10	10		10	36	10		10		10		10	10

* 자료: 여성가족부(2008), 「한부모지원사업안내」, 81-84

〈표 4〉 미혼모 가족대상 복지시설

(2007.12.31 현재)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2)
대상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6월미 만)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 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 식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 혼모로서의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보호기간 (연장가능기간)	1년(6월)	1년(1년)
지원내용	숙식무료제공분만의료 혜택자립지원: 직업 및 인성교육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 지원법 대상에 한함) 숙식무료제공 자립프로그램실시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시설수	25개소	15개소
입소정원	649명	174명
운영비지원예산*	1,238,000원(인/년)	9,000,000원(세대/월)

- * 자료: 여성가족부(2008),「한부모지원사업안내」, 71-84에서 관련내용발췌 및 재구성
- ** '04년 통합관리운영비로 변경되면서 실질적으로 감소된 운영비 14.4%와 '04년도부터 '07년 도까지 물가 상승분(10.8%)을 합산하여 모든 항목별 단가에 반영. 따라서 두 시설의 운영비는 '04년 대비 각각 29.1% 인상.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자보호시설이 전국 41개소가 있는데, 미혼모시설 퇴소자 가운데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거주지 상관없이 입소가능하다. 거주기간은 3년이며 2년 연장가능하며, 생계비, 중고등학생 학비 지원, 방과 후지도, 아동급식비, 직업훈련수당지급, 영구임대주책 입주 우선권, 모자보호시설 퇴소시 정착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저소득 모자 세대에게 일정기간주택편의만을 제공하는 시설로는 모자자립시설이 있는데, 전국 4개소로 정원은 61세대이다. 이 역시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 가운데 자립준비가 미흡한 경우

²⁾ 지난해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며 '미혼모 지원시설'을 '미혼모자 지원시설'로 바꿔 자녀양육지원을 분명히 했고,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 갓 출산한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1년쯤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홈'으로 또 '미혼부자지원시설'도 지난해 인천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한겨레신문, 2008/05/01 19:46). 이 시설은 2003년 처음 개소할 때는 양육 미혼모 중간의 집에서 점차 양육그룹홈,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되고 있다.

에는 입소가능하다. 모자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운데 중고등학생 학비 지 원, 직업훈련수당지급, 영구임대주책 입주 우선권 만 지원되는데, 지원범위와 규모를 떠나 절대적으로 시설의 수가 부족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5조의2항(보호대상자의 범위의 특례)에 따르면,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 5조에도 불구하고 제 19호제1항제1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이용시 이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 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 5〉한부모가족지원 내용

구분	복지의 내용	
복지급여	- 생계비 - 아동교육지원비 - 이동교육지원비 -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 아동양육비(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 실시함.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급여 실시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복지자금	-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아동교육비 - 의료비 - 주택자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고용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사업장에서의 우선 고용	
가족지원서비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부양·가사·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등	
주택	-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시 일정비율 우선 분양	

출처: 여성가족부(2008), 한부모지원사업안내: 279~297에서 일부내용 발췌 후 재구성

이 밖에 위기에 처한 모자가정이나 미혼모는 3일 이내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7일까지 연장 가능한 여성 긴급 피난처가 있으며, 의료보호서비스로는 보호시설에 있 는 미혼모의 경우 무료진료 및 분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저소득 모자가족에 해당 되는 미혼모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 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 누구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미혼모부자 가정의 아동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받는다.

아래의 표는 분야별 세출예산 가운데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의 예산비중을 보여 주는 것이다. 2007년의 경우에는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의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비용의 0.4%에 불과하고, 2008년도에는 예산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총 복지비용의 13.1%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보건복지가족부(2008) 분야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크게 증가한 보육·가족 및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비 가운데 보육지원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한부모 가족지원을 포함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다소 증가세이지만, 정작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관련사업비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예산이 7.1%로 감소하고 있어 미혼부모관련지원사업의 비중을 짐작케 한다.

〈표 6〉가족기능강화 지원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07예산	2008예산	スプ/D A).	
TE	(A)	(B)	증감(B-A)	%
합계	(43,424)	79,075	(35,651)	(82.1)
□ 한부모가족지원	(4,495)	4,177	(△318)	(△7.1)
- 모부자시설기능보강	(3,483)	3,483	(-)	(-)
- 모부자복지단체지원	(33)	33	(-)	(-)
- 저소득모부자가정보증보험료지원	(146)	171	(25)	(17.1)
- 자녀양육비행지원서비스	(325)	325	(-)	(-)
- 한부모가정안정지원사업	(310)	_	(△310)	(순감)
-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사업관리	(20)	_	(△20)	(순감)
- 저소득모부자가정이차보전	(178)	165	(△13)	(△7.3)
□ 결혼이민자가족지원	(532)	2,257	(1,725)	(324.2)
□ 가족친화환경조성	(639)	838	(199)	(31.1)
□ 아동양육지원	(2,691)	5,601	(2,910)	(108.1)
□ 한부모가족양육교육비지원	(30,005)	40,656	(10,651)	(35.5)
□ 가족센터운영	(5,062)	7,394	(2,332)	(46.1)
□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	(-)	18,152	(18,152)	(순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혼부모의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다양한 보호시설과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만, 그 지원규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복지정책에서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은 남녀한부모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등과 더불어 미혼모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혼모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양육에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미혼모라는 사회적 오명을 다소 완화시키면서 사회적 지원의 합 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의 연령과 욕구에 따른 맞춤식 지원은 가능하지 않은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미혼모를 위한 시설운영에 있어 미혼모자시설 지원의 경우, 출산 후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은 제외되어 있어 실 제로 출산아동을 직접 양육하거나 입양이나 보호시설 등으로 보내기 전까지의 모든 비용은 미혼모의 몫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미혼모보호시설 입소 자는 의료보호 비적용 분야의 의료비 발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치료비로 1인당 20만원만 지급되고 있어 개인별 사용액 상계는 가능하나 초과액은 시설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다(허남순, 2006).

또한 모자시설의 경우, 입소자격의 차별은 없으나 실제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된 기혼여성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양육모를 위한 지원체계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수적으로 미미하다 고는 하나 양육 미혼부를 위한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데, 이는 수요대비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성급한 요구일 수 있으나 자녀양육의 의무와 권리는 남녀가 공 히 부담해야한다는 당위적 차원에서 미혼부 관련 지원사업을 보다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양육미혼부모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인 문제인데, 이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주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들의 주거비 이나 양육미혼부모를 위한 주택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 가운데는 자녀양육을 둘러싼 원가족과의 갈등으로 시설 퇴소 후 거주 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때로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임대 주택우선분양제도가 있으나 신청 후 대기기간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거 욕구에 대응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전세대출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우 6세미만의 아동 에 한해 월 5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들 지원액의 규모가 턱없이 작을 뿐만 아니라 아 동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어린 아동을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개인 이나 친인척에게 아동 보육을 의뢰한 경우는 사실상의 보육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에서 자녀양육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혼모의 부모가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거부하고 있어, 부모로 부터의 독립을 감수하여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경우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특히 10대 청소년 미혼부모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최 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절대 빈곤층이 되어야만 수급자가 될 수 있는 현행제 도 상에서는 의료보호 및 영유아보육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은 미혼모들의 수 급권 탈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취업 및 자립의지가 약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원화된 자격기준체계의 재고 또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정책은 한부 모가족지원법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혜택을 받는 한부모 가족의 비율 조차 전체 한부모가족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국회의원 홍미원의원실, 2006). 곧 제도적인 형태를 갖추고는 있지만 아직은 실효성있는 한부모가족지원으로 평가하기에는 제도의 포괄 수준이나 내용적으로 크게 미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미혼모만을 핵심대상 으로 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한부모와는 다른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보이는 미혼모들 의 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기때문에 미혼부모에 대한 종합적 지원정책으로서 의 면모는 상당히 약하다. 즉 현재의 지원규모와 수준은 당장 출산을 목전에 둔 미혼 모여성의 산전후 회복과 임시보호의 기능을 갖춘 긴급구호의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양육하는 미혼모 들을 위한 자립지원은 아직은 태부족하다.

무엇보다 미혼모에게 특화된 직업교육과정 개발과 직업연계 등 가능한 자활지원프 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지만, 10대 청소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한 다면 10대 미혼모의 학업지속들 위한 제도적 기반 또한 시급히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는 임신 후 학교를 계속 다니거나 출산 후 학교로 복귀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10대의 출산 후 학교복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이 의 양육과 학업의 병행을 위해 학교에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Fursterberg & Weiss, 1997: 도미향, 정은미, 2001:8 재인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미혼모들의 학업복귀나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조차 활발하지 않다.

다른 한편, 미혼모 자녀의 주요 보호기제로 인식되어온 입양제도를 미혼모의 부모 권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의 경 우 연간 3000여명 내외의 아동이 입양되고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미혼모의 아동이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입양은 1970-90년 동안 크게 증가해 왔으나,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다소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입양의 비중이 점차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입양실태의 추이(1958-2007)

(단위: 명, %)

년도	입양전체	국내입양	국외입양	국내입양비율(%)
1958-1960	2,700	168	2,532	6.2
1961-1970	11,481	4,206	7,275	36.6
1971-1975	31,183	9,901	21,282	31.7
1976-1980	42,269	15,304	26,965	36.2
1981-1985	50,502	15,424	35,078	30.5
1986-1990	41,342	11,099	30,243	26.8
1991-1995	16,791	5,817	10,974	34.6
1996-2000	18,634	7,479	11,155	40.1
2001 – 2005	19,577	8,130	11,447	41.5
2006	3,231	1,332	1,899	41.2
2007	2,652	1,388	1,264	52.3
계	240,362	80,248	160,114	33.3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3) "한국의 입양실태 분석":88쪽 재인용(1958-1992)

보건복지부(2000) "행정백서":244(1993-2000)

보건복지부(2007) "입양현황" (2001-2007)

그러나 1980년대 이래로 입양아동의 80%는 미혼모의 아동으로 충원되어 왔다는 점 에서 미혼모와 아동의 분리과정의 용이성이 갖는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미혼모의 경우 아동을 양자로 삼을 경우에는 출산 이전부터 입양기관과 관 계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미혼모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미혼모가 입양기관 을 소개받는 경우와 아동을 입양시킬 결심으로 입양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입양 기관 안에 출산 전후의 케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강 은화, 2005:43).

주지하듯, 한국전쟁이후 한동안 한국사회는 국제 입양을 요보호 아동입양의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간주해 왔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국내입양을 늘이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의 근대사가 시작된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비밀성과 익명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 폐쇄적인 입양이 이루어졌으며 입양 현장에서 입양 기록도 비밀유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다. 이는 초기 입양에 관한 주요 준거 틀 마련에 있어 미국의 영향이 큰 탓도 있지만, 혈통적 순수성에 대 한 한국 특유의 문화와 맞물려 진행된 결과이다(이봉주, 2007).

근자에 들어 한국사회에서도 공개입양이 늘고 있어 입양문화에서의 변화가 다소 확인되고 있으나, 여전히 입양의 대부분은 폐쇄적인 입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 혼모는 아동을 키우기 보다는 아동이 태어나기 전에 입양을 결정하여 아동이 태어난 후 바로 입양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미혼모아동의 특성은 바로 한국입양문화 와 높은 부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미혼모의 입양결정 후에는 바로 입양동의 서에 서명하게 되는데, 미혼모가 입양동의서에 서명하면 입양기관에서 관계부서에 입양대상 아동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관계부서에서는 먼저 부양의무 자 공고를 실시하게 되는데, 미혼모의 아동인 경우 미혼모가 입양동의서에 서명만 하 면 형식적인 부양의무자 공고를 거쳐서 입양대상이 된다(김영민, 1989 :7). 이것은 미 혼부의 출현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지만, 호적법의 규정에 따르면 혼외자의 경우 모친이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공고과정은 생략되나 절차상 부양의무 자의 공고가 있음은 곧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는 점 에서 보다 면밀한 해석을 요하는 것이다. 즉 미혼모로부터 입양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상태이면서 형식상으로는 부양의무자 공고가 실시되는 것임을 함축하는 것으로 곧 미혼모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도 실제로는 친권을 포기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강은화, 2005:47-8).

국내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입양의 효력은 호적법에 의한 신고만으로 발생하며 입양된 아동의 신분은 양자로서 기록되지만, 동법 제 8조에는 입양된 자는 양친이 원할 경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경우에도 호적상의 신 분은 양자로 남는다. 그러나 주된 입양의 형태는 호적상에 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아 니라 입양사실을 아동과 타인에게 숨기고 양친이 낳은 것처럼 하여 입양사실을 계속 비밀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입양되는 아동의 약 95%가 비밀유지가 가능한 생후 5개월의 건강한 유아에 한정되고 있다. 실제로 장애아동이나 연장아(국내의 경 우 2세 이상의 아동)의 입양과 호적이 있는 아동의 입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는 무엇보다 입양의 비밀유지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친부모의 호적에 들 어간 경우에는 양친의 호적에 양자로서밖에 들어갈 수 없으며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복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입양문화를 통해 입양아동의 허위 출생신고가 묵인되고 미혼모의 친권이 포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혼모의 아동이 입양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되도록 유도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배태순, 2002; 강 은화, 2005:48-52).

아래의 표는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입양수와 호적상의 신고건수를 대비하고, 양자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개별 입양과정의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양자를 들이는 과정에 서 이성양자의 방식보다는 친자로서 등록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동성동본의 혈연자 입양을 보통양자로,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간의 입양을 호적상의 이성양자로 구분한다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건 수에 비해 호적상의 이성양자가 1/20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가족문 화를 고려해 볼 때 여타의 가족이나 친인적 관계에서 동성동본의 혈연자 입양이 이 루어진다고 해석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표 6〉 입양건 수와 양자의 유형변화

(단위: 명)

연도	입양기관을 통한 국내입양 건수	호적상 이성양자	호적상 보통양자
1977	3,079	680	4,046
1980	3,657	354	3,558
1985	2,855	446	3,044
1990	1,647	407	2,299
1995	1,025	407	2,043
2000	1,686	400	2,777
2001	1,770	324	2,864
2002	1,694	168	2,423
2003	1,564	139	2,198
2004	1,641	78	2,562
2005	1,461	93	3,154
2006	1,332	71	3,890

출처: 보건복지부(1981) "보건사회통계연감"(1977-1981)

보건복지부(2000) "행정백서"(1982-2000)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2004) "보건복지통계연보"(2001-2004)

박병호(1996) "가족법논집"(1977-1987)

법원행정처 "사법연감"(1988-2006)

끝으로 미혼모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학교의 성교육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방적 시각에서 본다면, 미혼모예방은 크게 일차예방(primary prevention)과 이 차예방(secondary prevention)의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데, 일차예방은 임신 예방이나 피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차예방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결 과를 겪지 않도록 미혼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Voydanoff & Donnelly, 1990). 따라서 앞서 살펴본 직접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등은 2차 예방의 범주에 가까 운 반면, 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은 일차예방의 범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급별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재량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연간 10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실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교 육내용의 효과성은 각 개별 학교에 좌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의 현장에서 성교 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며 의무교육으로서의 중요성과 비중이 인식되고 있는지의 현 장점검이 사실상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성교육수업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정확한 자료 는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위험성이 있지만 학교교육에 대한 압력이 적다는 점에서 성교육의 의무 시간이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생물, 보건, 체육교육의 연 장선에서 특별한 전문성 없이 진행되거나 일방적인 순결교육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에서는 교과교육시간에 밀려 전혀 실시하 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 향후 성교육의 실효성과 교육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Ⅳ. 결어 및 정책방향

이른 나이에 미혼상태에서 경험하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당사자와 그 가족에 국 한된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미혼모의 자녀출산과 양육 문제는 미혼모 자신 은 물론 그들의 자녀와 원가족, 나아가 미혼부와 그들 가족생활의 변화를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특히 현재와 같은 비율로 제도적 인 결혼과 자녀출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이미 전체 가구의 20%가 1인가구이며, 이혼과 재혼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가족관계는 과거에 비 해 훨씬 유동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20-30년 내에 자녀출 산이 이루어지는 가족환경과 남녀관계의 틀은 훨씬 다양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 혼부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정책방향과 지원서비스는 보다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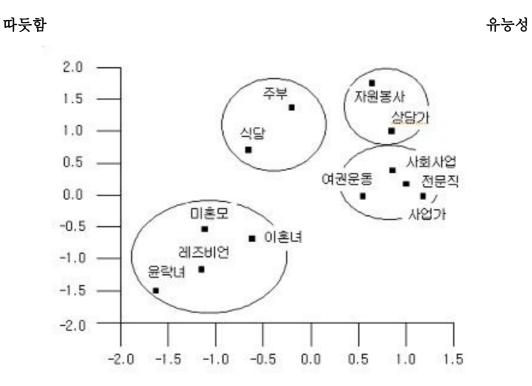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이들 자녀에 대한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사회문화적 토양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책 지원의 공감대를 쉽게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혼부모지원정책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혼

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미혼모가 봉착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곧 이들이 주요 여성 빈곤층을 형성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지만, 시장중심의 노동정책 과 복지정책으로의 편향은 곧 이들의 빈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보다는 당장 활용 가능한 인력개발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대 미혼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미혼모의 평균연령이 20대 초반임은 상기한다면, 이들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이들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보장해주지 않 을 경우 이들은 곧 빈곤여성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빈곤상황은 노년기로 이어져 이들에 투여되는 복지비용의 총량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미혼부모 와 이들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의 의미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가족형성에 있어 각자의 삶의 방식에 따른 다양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변화 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미혼의 모자가족이나 미혼부자가족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야할 이유는 전혀 없다. 특히 최저출산경향과 같은 현재의 인구학적 위기에도 불구하 고 결혼지위를 가지고 출산여성의 합법성을 평가절하고, 그들의 자녀를 백안시하는 것은 더 이상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미혼부모지원정책 의 주요한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미혼모에 대한 시각과 정책적 주안점은 각기 사회마다 다른데, 예컨대 영국과 미국 에서는 정숙함을 강조하는 예방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비해 스칸디나비아의 국 가들은 좀 더 자유로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스칸디 나비아 국가들은 70년대 이후로 피임, 낙태에 대한 정보를 발달시켜 10대의 임신·출 산을 감소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 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정책은 이들의 경제·사회적 자율성의 접근과 사회적 배 제에 대한 투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장혜경, 홍승아, 김혜영, 2006:79)

한국 미혼부모에 대한 정책방향 역시 이들의 경제사회적 자립능력의 제고와 차별 해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서구의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목표를 갖게 된다. 그러나 서구에 비해 한국사회에는 상당부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혈연성과 제도적 혼인에 근간한 가족주의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 엇보다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가 가장 중요한 정책아젠다로 부각될 필요 가 있다.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누적적인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으나, 2005년도 한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아래와 같은 그림은 미혼모에 대한 대중적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료: 김혜숙, 안상수 외(2005):122에서 재인용

〈그림 2〉대상집단들에 대한 유능성과 따뜻함 차원의 군집분석결과

즉 위의 그림은 미혼모에 대한 대중적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예컨대 미혼모의 경우 성매매여성/레즈비언여성 집단보다 약간 상위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다소 덜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식당아줌마나 일반 주부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식당아줌마나 주부들에 대한 감정온도는 따듯함이지만 미혼모는 차가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집단에 관한 유능성 평가점수에 있어 미혼모는 윤락녀(성매매여성)보다는 약간 상위에 있으나 레즈비언여성과는 거의 같은 위치에 있으며, 여류사업가나 전문직 여성집단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특정연구만을 가지고 이를 일반하기어렵지만, 적어도 미혼모에 사회적 시선은 우호적이기보다는 여전히 비호감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특히 혼전에 임신한 여성이라는 편향적 사실만을 강조하여 이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양육모들에 대한 격려의 시선과 더불어 남녀 동등한 책임 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의 주체라는 이유로 여성만을 비난하고 모든 책임을 미혼 여성에게 떠 맡기는 가부장적 사회문화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성장과정에 서 개인의 판단과 선택의 과정을 사회적으로 모두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타인 과 다른 삶을 경험하고 선택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배제하고 차별할 수 있는 것 은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비록 나이가 어리고 미숙한 판단에 의한 결과일지라도 생 명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 나아가 자녀양육을 선택한 미혼여성 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미혼모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혼모들은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가족의 이해와 배려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어(여성가족부, 2005) 이들을 바라보는 제 3자의 시각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지와 친구 가족 등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원가족의 관계회복을 위한 상담 및 지원관리프로그램의 운영과 효과성에 있어서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완화가 매우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음으로는 미혼모정책은 그 어떠한 정책보다 예방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10대 청소년 미혼모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쪽에서는 10대의 미혼모 문제가 심긱하 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입시경쟁에 놓여있는 것이 한국청 소년의 실상이다. 따라서 수적인 비중만을 놓고 성교육보다는 입시중심의 교육만이 우선시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성교육의 실효성을 놓일 수 있는 방안마련 을 통해 효과적인 성교육관리 및 평가체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녀관계와 임신예방에 그치기보다는 임신과 출산, 양육의 전 과정을 아우름으로써 성행위에는 남녀개인 모두는 물론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제까지 한국의 미혼모정책은 미혼모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입양 정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혼모자녀에 관한 한 입양정책을 우 선시해온 경향이 없지 않다. 따라서 향후에는 자녀양육을 원하는 미혼모의 비율이 증 가한다는 점에서 미혼모로서 이들의 부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 져야 한다. 혼인하지 않은 여성의 출산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풍토로 미혼여성 의 부모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침묵해온 것이 사실이다. 기실 미혼모의 연령이나 학력 이 낮고 경제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는 쉽지 않다 는 점에 자녀를 원하는 안정된 가족의 품으로 이들을 입양시키는 것 또한 훌륭한 대 안일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미혼모의 출산이 양육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행입양제도에 의거하면, 13 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게는 월 10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지 원되지만, 저소득층의 한부모나 미혼부모에게는 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는 국내입양을 권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유인책일수 는 있으나, 저소득층 미혼부모의 자녀양육비 지원액 5만원과 비교한다면 다소 정책의 지향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의구심을 갖을 수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의 성장과 성인기로의 진입 을 위한 준비가 더 많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원가족의 다양한 도움과 개입이 요구되 고 원가족의 의사 역시 중요하지만,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원가족의 갈등 속에서도 양육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자녀양육과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특별한 보호기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미혼부모에 적합한 맞춤식 지원정책의 근거가 되는 독립적인 법률안을 논의 혹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 족지원법은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면서도 이들의 자녀양육지원의 근 거를 제공하지만, 한부모의 평균연령보다 약 10-15세가 낮은 미혼부모에게는 보다 근 본적인 인적자원개발과 양육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 다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미혼모들의 학업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지원대책 또한 대단히 시급하다. 입시교육만을 강조하는 현행의 학교 교육 풍토에서 청소년기의 미혼모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들을 받아주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양육을 선택한 경우에는 학교생활적응 조차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입시와 직업교육을 선택하 여 교육 및 훈련받을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들 교육기관을 대안학교 혹은 학력인정기관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 며, 단기적으로는 이들의 검정고시준비와 홈스쿨링 등을 지원해주는 방안과 더불어 전국에 산재해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직업훈련기관의 연계를 통해 무료의 직업훈 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립의지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한편, 2008년 1.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 계등록법"이라고 함)의 시행은 미혼모 자녀에 대한 차별완화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 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 여전히 출생 신고시 신고서에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이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구학적 정 보와 변동을 확인하는 주요한 기록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현재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차별이 유지되는 한 사실 그대로 기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향후 가족 관계등록법의 시행의 논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지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한부모가족을 통해 논의된 바 있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한다. 즉 혼인과 관계없이 친부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만 18세 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친부의 수입 가운데 일정 비율을 양육비로 지원하도록 법으로 명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한부모 가족과 달리 미혼부들의 경우에는 미혼부의 30%내 외가 10대, 20-40%가 21-26세라는 점에서 양육비 지급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문제 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혼한부모와 달리 미혼부 · 모의 경우에는 관계가 일시적 경우 가 많다는 점에서 미혼부의 인정과 책임을 둘러싼 남녀의 이견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충분한 선행연구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미혼부의 사회적 책임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혼부모관련 시설 및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미 혼부모관련 종합대책의 수립과 미혼부모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008년 도에는 여성가족부의 개편과 더불어 한부모가족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 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미혼모지원업무의 점검을 통해 미혼모 지원정책에 대한 종합 적인 계획, 평가, 협력 및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점검결 과에 준해 미혼모에 대한 일관된 통계자료의 생산은 물론 이들에 대한 종합 지원대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2004년을 기점으로 지원기관이 급속히 증가해 왔다는 점 에서 기관별 기능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이나 모범적인 사례관리방안을 발굴하여 이들을 지 원하고, 나아가 이들의 효과적인 운영방식을 서비스 기관 전체가 공유하는 방안을 마 련함으로써 이들 기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종합지원대책 수립을 통해 현재 미혼부모들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개 인탁아, 가정탁아 및 친인척에 의한 보육을 인정하여 이러한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 록 보육비 지원의 다각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업, 취업 등 양육미혼부모에 맞춘 다양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혼모의 안정된 양육 환경 을 제공하기 위해 미혼모 아동의 연령 만 3세 까지 국민기초생활법 상 미혼부나 모의 부양 의무자 관계 조건을 유예하여 수급권을 확보하는 방안과 더불어 양육 미혼모나 부를 위한 정착금 등의 지원방식을 모색하는 것 등 보다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황정미, 김혜영, 장혜경, 2007:90).

▶ 참고문헌

강영실, 2000, "청소년 재임신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강은화, 2005,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 입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 22권 3호:39-59.

김만지, 2001, "미혼모 스트레스의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권 8호.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외, 2005,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하위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Vol. 19(3):117-133

도미향, 정은미. 2001, "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3권 2호: 1-11

배영미, 2001, "청소년 미혼모의 기질과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Vol. 8. no. 3:45-70

서울시 부녀복지연합회, 1996, 「한국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제1회 여성복지세미나 자료.

윤미현, 2000, 10대 미혼모의 임신 및 유아입양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윤혜미. 1999, "청소년 임신·출산의 경향과 사회적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8호:161-186 은기수, 권태환, "한국유배우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의 실태 및 결정요인", 한국인구학 25권 1호: 5-32

이삼식, 1998,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장혜경 외, 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 홍승아, 김혜영, 2006,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비교연구」, 한국청 소년개발원·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1987, 「미혼모발생 예방대책에 관한 프로그램」, 한국여성 개발원.

한국여성노동자회, 국회의원 홍미영 의원실, 2006, 「한부모 빈곤여성 자립 정책 진단 및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한인영, 1998, "미혼모 발생현황 및 미혼모 복지의 방향", 한국모자보건학회 춘계학술대회

황정미, 김혜영, 장혜경, 2007, 「가족돌봄의 사회화 등 가족정책과제개발연구」, 여성가족부

허남순, 2006,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2008,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도 아동복지사업 안내」

Lee, Bong Joo, 2007, "Adoption In Korea: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International Social Welfare* 16:75-83

Institute for Amercian Values, The Age of Unwed Mothers, 1999.

토론

- 허 남 순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한 상 순 (애란원 원장)
- 김 혜 선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팀장)
- 유 경 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Richard Boas (MD·Founder and Director, Unwed Korean Mothers Support Network/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설립자 겸 디렉터)
- Ellen Furnari (Consultant, Unwed Korean Mothers Support Network/ Former Vice President of Programs & Strategy, Give2asia/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고문)

토론문

허 남 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미정 박사님과 김혜영 박사님의 주제발표 원고를 읽으면서 과거에는 50-60년 동안 걸려서 일어났던 변화가 최근에는 5-6년 만에 일어나는 듯한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혼모라는 용어는 물론 미혼모를 위한 복지시설 및 대책 등을 한부모 제도 안에 법으로 명시하고 그들을 위해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변화입니다,

미혼모들도 다양해져서 과거와 같이 저학력, 저연령의 빈곤한 사람들만 미혼모가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미혼모가 65%이상이 되며 연령도 20세 미만의 미혼모 보다는 21세 이상의 미혼모의 비율이 더 많은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과거와 같이 미혼모가 되면 무조건 아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허락된다면 아동을 양육하기 원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혼모로서 아동을 양육하려는 사람보다는 경제적 지원이 있어도 지원이있어도 아동을 양육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67%가 넘습니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미혼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미혼모 자신과 아동에게 가해지는 가족들의 비난과 사회적인 차별 등이 아직도 심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의 혼전 임신은 혼수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미혼여성의 임신은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로 간주 되고 있다. 그러나 성개방과 함께 미혼여성의 임신과 유산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미혼여성의 출산 역시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면 미혼모를 더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로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시하던 상태에서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미혼모 예방 대책을 세우는 한편 미혼모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도 미혼모부자

들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한 다양한 대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토론 원고에서는 발표자들이 제시한 대책들을 동의하면서 미혼모를 위한 대책 을 세울 때 먼저 고려해야 할 몇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원칙에 근거한 몇 가지의 대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1. 원칙

1) 미혼모를 위한 정책은 우선 대상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어야 합니다.

첫째, 대상을 고려한다는 것은 우선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고 보호자의 보호가 필 요한 10대 인가, 아니면 성숙한 20대인가 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미혼모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미혼모인가 아니면 쉼터 등의 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혼모인가

셋째, 미혼모가 아동을 입양 보내(보낸)기원하는 미혼모인가 아니면 아동양육을 원 하는 미혼모인가 등 대상에 는 미혼모인가를 고려해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는 미혼모와 쉼터 등의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미혼모를 모두 고려해서 정책이 만들 어져야 합니다.

2) 미혼모의 상태를 고려해서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합니다.

단계별로는 성관계 이전의 예방->성관계 후의 조치-> 임신->산전 보호-> 출산-> 아 **동양육 또는 입양** 의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고려되어 야 합니다.

3) 미혼모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즉 입양을 보낼 것인가 자신이 양육할 것인가. 보호시설에 거주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사회 거주하면서 아동을 양육할 것인가 등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만 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설보호의 경우는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 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는 쉼터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나 시설에서 거주하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4) 아동을 양육하기로 결정한 미혼한부모의 경우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일반 한부모와는 다른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혼한부모의 경우는 다른 한부모 가정과는 다르게 가족들의 지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혼 한부모 가정이 하나의 가정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적어도 3년 정도는 생계보조 나 주거 지원, 아동보육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통해 미혼한 부모가정을 보호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2. 대책

이와 같은 원칙을 전체로 하면서 단계별로 필요한 대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1) 예방

한국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미혼여성이나 남성을 위한 최고의 대책은 예방입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대책이 불란서 식으로 할 것인가 미국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국식의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불란서 식은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사귀는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면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자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자녀들에게 적합한 피임방법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의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피임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 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며 그것이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불란서는 동거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많지만 어린 미혼모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혼전 성관계나 임신이 많지만 자녀들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들의 태도는 미온적이고 내 자녀는 혼전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성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많은 지역에서는 학교에서의 성교육도 부모의 허락 이 있어야 참여

시킬 수 있는 형편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실시했던 청소년 임신을 위한 예방은 실패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빈곤지역으로 갈수록 저연령 저소득의 미혼모들이 많고 미혼 모들을 위한 교육 등 복지 대책이 많지만 여전히 아동을 양육하는 저연령, 저학년 미 혼모들의 반복적인 임신, 만성적 빈곤, 아동학대, 약물 중독, 동거남으로 부터의 아동 성학대 등 이로인해 아동의 가정위탁 의뢰, 조손가정 증가 등의 문제는 미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털사 이트를 통한 예방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

청소년들에 대한 한국의 분위기는 불란서보다는 미국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부모들 이 불란서의 부모들처럼 되려면 아마 지금 부터 50 아니 100년은 더 지나야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국보다는 한국이 청소년 임신을 예방하는데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여건을 활용하면 지금보 다는 훨씬 더 청소년임신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중앙차원에서 미혼모부 예방 및 미혼임신관련 정보를 위한 포털 사이트 운영

한국은 경제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거의 100%에 가까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인터 넷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과 예방은 물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트에는 청소년 피임, 성병, 성관계, 미혼임신, 미혼여성 임신 통계 임신 대책, 미혼모복지 대책, 청소년 임신 및 미혼모 상담 센터, 청소년임신 및 피임 상담 산부인과 등등의 모든 정보가 담겨야하며 아울 러 online 상담 뿐 아니라 Off line 상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리스트는 물론 기관 까지 연결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현재 Naver 나 Google 등에서 미혼임 신, 청소년임신을 치면 산부인과나 입양기관 홈페지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는 청소년 임신을 위한 예방이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임신, 미혼모, 성병 등에 대한 단어를 치면 청소년을 위한 중앙의 포털사이트가 제일 먼저 뜨도록 해야합니다.

(2) 초, 중, 고등학교, 대학의 성교육 내실화

다행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율이 가장 높은 곳입

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99%가 중학교를 진학하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자의 97%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활용해서 임신과 피임에 대한 성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성교육에 대한 교과목도 늘고 보건교사를 통한 성교육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은 매우 피상적일 뿐 피임을 하거나 성으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식하기는 20년 전과 전혀 다름없습니다.

심지어는 피임 지식에 대해 무식하기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 내실화는 보건 교사만 달라져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교육에 대한 교장이나교감의 태도도 달라져야합니다. 보건교사와 교장 교감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의 필요성과 내실화된 성교육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부모들로 부터 성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과 어떻게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들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방법 그리고 청소년 임신, 성병, 피임 등에 대한 지식을 전달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성 위험 집단에 대한 상담 및 특별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학교 내에 성 교육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에 대해 더 관심을 갖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교육이나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피어리더를 활용해서 상담선생이나 보건 교사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피어리더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위험수위가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하는 차별화된 교육도 필요합니다.

2) 미혼임신여성 산전 및 출산 지원

임신한 미혼여성에 대한 지원과 출산에 대한 대책이 보편화 되어야 합니다.

(1) 지역사회에 기반 한 청소년 및 미혼부모 종합지원센터

임신한 미혼여성에 대한 현재의 지원은 시설에 입소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혼여성이 임신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상담실은 입양기

관이나 미혼모 시설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미혼모나 부가 입양이나 미혼모시설 입소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임신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청소년이나 미혼부모의 임신과 분만, 아동양육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해주는 기관 이 지역사회마다 한 곳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2)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여성을 위한 산전 및 산후 서비스

시설에서 보호 받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산전 진단 및 출산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 으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은 산전보호나 출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 다. 부모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된 미혼모들이 의료보험을 이용해 산전 진료나 출산 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미혼모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산전 진찰이나 분만 등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에 입원한 미혼모이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 혼모이던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인 것이 파악되면 개복수술, 조산아 인큐베이터 입원 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양육미혼모를 위한 지원

(1) 주거지원프로그램

- 미혼양육부모공동가정

미혼양육 부나 모를 위한 소규모공동생활 가정을 지역별로 더 많이 확대하여 아동을 양육하면서 직장을 다니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부보가정 퇴소 시에 모자원을 퇴소하는 한부 모가정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에서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미혼양육부모 전세자금 지원

양육미혼모나 부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전세자금을 융자 해 줌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아동연령이 만3세가 될 때까지는 국기법상 미혼부나 모

의 부양의무자 관계 조건을 유예하여 수급권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20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를 위한 방문간호사 제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의 산후 조리와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와 연계하여 방문간호 사업을 실시해야합니다. 미혼부모종합지원센터는 보건소와연계해서 방문간호사나 가사 도우미등을 미혼모의 가정에 파견해야합니다.

(4) 저소득 미혼모를 위한 우유 및 이유식 등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WIC 프로그램과 같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우유와 이유식 등의 쿠폰을 공급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때를 이용해 정부는 미혼모들에게 아동건강 검사, 양육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지원 대책

(1) 학업 및 취업지원서비스

임신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신 중에도 임신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 또는 개별 학습을 통해 학업이 지속되도록 하고 분만 후 학교에 원학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 취업교육 내실화:

취업 훈련 중에는 수급자로 지정하고 취업 후 생활 안정이 될 때 까지 2년간 의료보호혜택과 아동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2) 친부의 양육비 지급 책임 법제화

친부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 까지 아동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문

한 상 순 (애란원)

우선 포럼을 열고 귀중한 주제발표를 해 주신 여성 정책 개발원과 이미정, 김혜영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를 외면하는 한국의 현실과 현 미혼모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발제에 나타난 것처럼 두 분의 제언-한국 사회에서 미혼모가족을 위한 최우선과제는 이들의 경제사회적 자립능력의 제고와 차별 해소에 두어야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적하신대로 한국사회의 미혼모를 둘러싼 사회적 변화를 검토하며 미혼모 이슈를 점검함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원인을 두고 결과만을 가지고 논의해 옴으로 인해 미혼모 아동의 문제를 입양을 위주로 개입해 왔으며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혼모 복지의 근본 대책에 대해서는 무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혼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실행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고에서 언급하신 몇 가지에 대해 현실 속에서 문제를 제기 해 보겠습니다.

1. 발제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미혼모양육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애란 원 81.4%가 아동 양육을 선택함.)

전국에서 미혼모자시설이 25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이 15개소로 인프라가 많이 확장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했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겉과는 좀 다릅니다.

즉 현재 미등록된 시설까지 모두 30개소인데, 그들 중 입양기관에 의해 운영 되는 곳이 17개소로서 이 시설들은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의 경우만 입소하게 하 여 지원하는 시설들이 다수입니다.

법적으로 명칭이 미혼모자시설이지만 실제는 자의 개념은 상실된 채 운영되 는 미호모시설들로부터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안고 지역 사회로 아무 준비 없이 그대로 퇴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국 15개소의 미혼 모자공동생활가정으로 입소하지 못한다면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므로 위기상 황으로 발전되기 쉽습니다. 이들은 삶에의 의지, 그리고 아동 양육 의지가 강하 지만, 지원체계를 만나지 못함으로 결국 삶에의 의지를 상실하게 되며 이는 아 동의 방임 유기 학대 사망 및 재 포기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아동 학대 예방센터에서 통계로 그 수가 증가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2. 이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혼모시설이 2006년 법 개정으로 인해 미혼모자시설로 전환되도록 했음으로 아동양육을 결 정한 미혼모가 아무 준비 없이 지역사회로 퇴소함으로 위기를 겪도록 방임해서 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 및 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 만이라도 법에 의거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소요 예산도 함께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3. 현재 전국의 15개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 여성가 족부에서 전국 여성복지시설 평가 실시에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의 평가는 최 하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 설치 목적은 자립달성인데 이 목표가 어느만큼 이루어지는지 세부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사정하여 이곳에 입소하는 미혼모양 육모들의 자립달성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4.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과 함께 입양을 보낸 미혼모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미혼 모공동생활가정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보장 시설의 범위 안에 포함하여 생계비 의료비 자립지원비 등을 지원함으로 이들의 자립 달성을 이루도록 하여 야 합니다. 인건비 외에 생계비, 직업훈련비 등 소요예산의 15%를 지원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특히 입양을 보내는 미혼모는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인해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게 되며 PTSD로 인해 삶이 극도로 무망합니다. 이들의 상담 및 자립지원을 통하여 안정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의 가정과 자녀 들을 보호하며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것입니다.

원고에 의하면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아예 보장시설 범위 안에 들지도 못하 고 있으므로 받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 5.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서 퇴소한 후 엄마들은 자립홈(self-surpporting home)이나 모자원, 혹은 정말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이들 중 많은 경우가 주거해결을 위해 모자보호시설을 선택합니다. 모자보호시설 입소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한해서만 입소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소득인정액이 79만원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되고, 저소득모자가정은 109만원이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모자원 입소나 임대아파트 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의 입소 신청 자격이 모두 상실됩니다. 주거비가 비싼 현실에서 이는 매우 좌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거해결을 위해 결국 엄마들은 직업을 갖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남는 길을 택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미혼한부모가정의 경우 주택공사의 매입임대 주택과 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자격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이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할지라도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권부여 시 미혼모의 가족사정을 하는데, 오히려 관계를 끊고자 하는 가족들임을고려해야 합니다.
- 6. 현행법상 미혼모자 가정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설에 입소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미혼모자 가정의 수를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계속 확대하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가할 수 있는 미혼모가정들은 그대로 재가하게 하면서 경제적 자립능력과 건강한 한부모가정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애란원에서는 2006~7년 여성 가족부와의 공동협력사업으로 미혼모자지원센터를 운영했고 2008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재가 미혼모의 자립지원, 부모교육, 자조모임(Self-Help Group)등을 Out-reach service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시는 Dr.Boas가 이 사업을 후원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Off-line에서 센터가 정식으로 운영되며 함께 사회인식 개선 및 정책 개발, 미혼모복지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미혼모자 자립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나아가 시설 입소를 원하

지 않는 미혼모의 임신기간동안의 의료상담 교육 자립지원 사업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또한 Dr.Boas의 후원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 7.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낙태 건수와 입양 아동 수를 고려하여 볼 때, 혼 전의 준비안된 임신 예방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재임신 예방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 1) 학교 체계내 학습 부적응및 가족문제를 조기 스크리닝 및 개입이 필요합니다.
 - 2)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및 직업교육등이 필요합니다.
 - 3) 임신 예방 요인은 교육 지속 및 자립 교육과 가족이 더 우선 순위입니다. (2000년 강영실.논문) 가족은 교육(직업교육 포함)의 결과 및 재임신에도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애란원은 미혼모지원센타의 프로그램으로 교육 지속 및 직업교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남성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감 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가 절실합니다. 학생 군인등 에게 인생 설계와 관련된 성 사용 계획과 결과에 대한 준비 등에 대한 교육이 소집단 토론식 교육 병행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 8. 아동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미혼부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급 소송에서 승소 하여도 책임 회피로 인해 1년 이상 지급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 9. 지금까지 애란원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개선 하기 위해
 - 1) 자립 성공 사례 발표.
 - 2) 자조모임 (SELP HELP GROUP) 회원들의 인터뷰 등 삶의 경험 나누기
 - 3) 자조모임을 통한 정책 및 제도 개선안 건의
 - 4) 일반인과 정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OFF LINE 센타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여 대사회 인식 개선에 노력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의 포럼 같은 작은 노력들이 모여 미혼모자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의 관심과 자립지원, 사회의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모아 미혼엄 마들이 낳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건강하게 키워내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토론문

유 경 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1. 한국사회에서 비(미)혼모로 살아가기

- 1) 비(미)혼모의 현실
- ① 용어: 미혼모/ 비혼모/ 싱글맘/ 한부모
- ② 범주: 결혼제도밖에서의 임신 후 인공 중절한 경우 결혼제도밖에서의 임신·출산 후 입양한 경우 결혼제도밖에서의 임신·출산 후 양육하는 경우
- * 자발적 비혼모의 증가

2) 사회적 편견

비(미)혼모에 대한 낙인 미혼모 인정 비율 3.5%, 전체 36개국 중 35위 (프랑스 62.3/미국 52. 2/독일 33.2/일본 21.6 : 07년 세계 가치관조사)

문제 있는 개인으로의 부정적 인식(성적, 도덕적, 이기적/ 무책임) 가족으로부터의 외면

- => 사회적 소외, 드러내기의 어려움
- * 낮은 혼인외 출산율과 높은 인공임신중절률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342,433건 (05년, 보건복지부/고려대, 의료기관 대상 조사: 기혼-198,515건 미혼-143,918건) 인공임신중절률(1000명당 인공임신중절 건수): 29.8(기혼-28.6, 미혼-31.6)
- * 양육과 입양 양육 결정, 결정의 어려움

해외입양(2007년 세계 4위)/ 국내입양(2007년 해외입양보다 많아짐) 입양의 이유: 아이의 미래를 위한 선택/비(미)혼모의 미래를 위한 선택

3) 열악한 복지정책

- 정확한 통계 부재 시설 중심의 통계 유추/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실의 비혼모 파악에 대한 공백
- 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으로 이어짐 학업 지속환경, 양육환경 부재. 불투명한 진로, 자신과 아이의 사회적 위치는 열악한 상황으로 연결
- 복지정책의 대상이나. 사회정책적 지원체계 미비 미혼모자시설 25개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5개소(07년) 복지 및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 열악한 양육비 지원

4) 경제적 어려움

10대, 20대 비(미)혼모 경제능력 부재 경제적인 자립기반 형성 어려움, 노동시장 구조

* 비혼모지원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등 수급권자 지정과 취업 및 자립의지 약화의 관계성

2. 비(미)혼모관련 정책 변화의 필요성

* 비혼모관련 연구 미혼모의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보건복지가족부06년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06년

경제적 자립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평등의식, 차별 아닌 차이 존중의 정책 실현.

1) '정상가족이데올로기' 넘어서기

저출산 사회의 출산장려정책(수당/ 불임부부 시술 지원...) 등과의 형평성 가족에 대한 선택권 존중 가족관계의 변화 이해/ 수용하기/ 함께 하기

- * 부모 혼인여부,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로의 인식
 - 2) 성문화 바로보기, 제대로 된 성교육의 필요성

임신, 피임, 자기정체성, 자아존중감, 성적자기결정권이 수용되는 성문화

3) 비(미)혼모 스스로의 인식 변화, 선택에 대한 지지와 격려

양육 의지가 있는 비(미)혼모의 증가 (02년: 15% 07년: 65%이상, 애란원 미혼모조사자료)

4) 자발적 비혼모의 드러남과 늘어남에 대한 인정

비판보다는 사회 현실로 수용, 지원하기

5) 양육 비(미)혼모에 대한 긍정적 사회 환경 조성

편견 깨기/ 차별없애기/ 가족의 이해와 지지/ 안전한 양육환경: 양육에의 도움- 보육 프로그램, 서비스의 지원/ 가족구성의 권리 등 교육/ 건강권/ 직업교육/ 학업지속 환 경 만들기/ 인식개선 캠페인과 실천 지침 등

6) 법/ 제도적인 구체적 지원방안 모색하기

현재 주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미혼모 및 미혼모시설에 대한 지원 ㅇ미혼모·부자가족지원 정책개발 및 추진

- ① 정확한 실태조사(정기적)- 개별 비혼모의 현실 고려
- ② 비(미)혼 부모와 자녀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 등 정보제공

포괄적인 지원정책인 한부모가족지원법(07년 모부자복지법의 개정)의 한계 인식 다른 한부모와의 차별성 인지. 현실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의 내용과 지원. 출산을 앞둔 비(미)혼모의 산전 후 회복, 임시보호의 차원에 머물러 있음,

- => 미혼부모관련 시설 및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종합점검 및 평가. 비혼모의 욕구 가 반영되는 자립지원 가능한 복지체계 마련
- ③ 10대 비혼모의 학업연계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
- ④ 상담 및 교육 등 심리적 지원
- 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의료비, 취업 훈련, 시설 연계, 직업연계, 생업자금, 주택자금, 양육비 등)
- ⑥ 입양문화 돌아보기 폐쇄적인 입양문화가 아닌 비(미)혼모와 아이를 고려한 원만한 입양문화 제도화, 입양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요구됨.

7) 정책에 따른 실질적 예산 편성

단기적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 비혼모 사례연구: 개별적 다양한 접근모델 통합적 접근을 통한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자립 지원

토론문

Richard Boas

(MD·Founder and Director, Unwed Korean Mothers Support Network/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설립자 겸 디렉터)

My name is Richard Boas, and I am honored to speak at today's KWDI Forum.

I am Founder and Director of The 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 which advocates for and raises the visibility of the issue of the difficult situation of unwed Korean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addition, I have established, at Norwalk Hospital, in Connecticut, as well as Connecticut Hospice, funds that assist indigent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 am a Board Member of The Charter Oak Challenge Foundation, which seeks to address issues of poverty and lack of quality education in Bridgeport, Connecticut, one of the poorest cities in the state.

In 1987, my wife and I already had two wonderful children, and wished to have a third child. However, we were unable to conceive, and decided to adopt. We decided to adopt from Korea, as we understood that children there born to unwed mothers faced a difficult future, especially girls. By adopting, we hoped to give a child abetter life in the States. In addition, we understood that Korea and the UShad the world's best-developed system of intercountry adoption. Esther was born in Pusan in October 1987 and came to us three and a half months later.

For many years, I was an ophthalmologist specializing in glaucoma, a potentially blinding disease. It was most rewarding, yet I wished to be able to help people in a different way.

In 2005, I learned that many local families could not adopt due to steep and rising

costs. I was especially moved by their desire to adopt siblings of children already adopted, also special needs children. I was truly grateful to Family and Children's Agency in Connecticut (FCA) and Social Welfare Society in Seoul (SWS) for bringing us our child, and wanted to be able to help other families adopt, as we did.

I began meeting with other adoptive families in my area. Together we started The Adoption Foundation at FCA. While I was with the foundation, we aided about fifteen families. It was truly gratifying to review applications from families, and make grants that would help them adopt.

I believed in our work, and wanted to do everything I could to promote it, so I asked to join the FCA social workers on their trip to Korea in October 2006, at my expense.

The trip changed me completely.

I was not prepared for my reaction to holding infants (some as young as four days old), meeting special needs children, visiting sick children in the hospital, and seeing a three month-old boy and his foster mom. These children had been relinquished by their unmarried mothers, and therefore orphaned. However, I was deeply moved by meeting a dozen young women in an SWS facility in Daegu. All were approximately 18-24 years old, all were pregnant and unmarried, and every single one of these mothers had already agreed to give up her child. Suddenly I realized that, 20 years ago, Esther's mother was one of these women, and Esther was one of these orphans. And I had the answer to a question that had bothered me since adopting Esther: I had not recognized or validated the woman who gave birth to my child, n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 had strongly supported adoption from Korea. However, I realized I had been blind to the circumstances of unwed Korean mothers, their children and families, and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adoption, especially international adoption, on mother and child. Seventy percent of unmarried Korean mothers give up their children. The US figure is 2%. Why the disparity? Is this truly necessary? More importantly, isn't it the right of any loving, capable mother to bring up her child, if she chooses, not only in Korea, but anywhere in the world? The women I met in Daegu, and Esther's mother Young Ja before them, had painfully relinquished their children, effectively with no societal alternative.

With my thinking sharply changed, I returned home, asking: How can I, an American adoptive parent, help so that the best interests of unmarried Korean mothers and their children are met? Is there a role that I should play, would it make a difference, and would it be accepted and embraced by Korean society? If a woman chooses to keep and raise her child, how can I help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she will be able to do this? Should she choose to place her child for adoption, how may I help her? If Esther had been born last week, what would have been the right things to do for her and her mother?

On average, 2000 children are adopted from Korea each year, and another 2000 are adopted domestically. Adoption from Korea sharply increased over 50 years ago as a valid response to the needs of war orphans and children fathered by American servicemen. It continues for completely different reasons. Some overseas adoption may always be necessary. However, why isn't Korea, a democracy with the world's 13th largest economy, helping its own? Why isn't it doing everything it can to help unmarried women keep and raise their children, if they choose? These brave women deserve all the help they can get!

Stunned, I left the pro-international adoption foundation I helped to start. Instead I began to focus on unwed Korean moms and their children. My hope was that I could do something to help Koreans positively address this issue.

An unwed Korean woman and her child endure social stigma, hostility, alienation from her family, insufficient childrearing resources, and lack of government support. Even though there is a father, the mother is told that since she created her problem, she must solve it, alone. If the mother gives up her child to adoption (which she usually does), she is faced with guilt and shame for the rest of her life. I love my daughter, and as grateful

as I am that Esther became my child, it pains me to see any woman give up her child because family, society and government will not support her - just as Esther was given up by her mother. I have met many Koreans who feel guilty about this issue, but who seem unwilling or unable to change it.

I respect and understand that Koreans have a five thousand year history, with patriarchal traditions that stress blood lineage and a stigma against unmarri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This longstanding stigma is largely supported by current public policy.

It is important for me to help make more visible the difficult situation of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and educate, inform, promote discussion, even debate, and serve as a resource in the hope that Koreans positively address the issue, in their own way. Koreans have a wonderful opportunity to embrace these mothers and children.

This is my fifth trip to Korea in less than two years. I have engaged in a number of activities which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support of Ae Ran Won, which aids unwed moms and their children, support of The Korean Womens Workers Association,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as well as Hanbumo--which all provide advocacy and support for older single moms. It is also my pleasure and privilege to support research to be undertaken by The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on a range of issues concerning unwed mothers.

I came to Korea this time to continue my ongoing work, and the future holds many return trips, I hope, to work with my friends and colleagues in this wonderful country. Thank you.

토론문

Ellen Furnari

(Consultant, Unwed Korean Mothers Support Network/Former Vice President of Programs & Strategy, Give2asia/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고문)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us to talk about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Korea, at the forum today. In particular I'd like to thank Dr. Lee and Dr. Kim who organized the forum.

I work with Dr. Boas as an advisor for the 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

I am very honored that Dr. Boas has chosen to include me in his work. In this capacity

I have been to Korea before, in fact this is my fifth visit in one and a half years.

I hope I am not repeating too much of what has been said before, or will be said after me. I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attention. I would like to talk about what is known and what is not known about the circumstances and needs of unwed mothers and briefly how this compares to conditions in western countries.

To begin with, as a foreigner, one of the things which strikes me is the lack of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It doesn't seem possible to get clear numbers of how many women give birth to children out of wedlock. There are good numbers for the number of children who are adopted either internationally or domestically. But how many other children are born each year and what happens to them and their mothers? And who are the men who father these children? The national data to answer these questions appears to be incomplete.

We have talked to many people who have shared research, statistics from the government, results of small scale studies. For the most recent year 2007 - it appears that 2652 children were adopted either domestically or internationally. This is down from 3562 in 2005 and 4206 in 2001. This appears to reflect the trend that organizations such as *Aeranwon* have experienced in working with unwed mothers, more of them are keeping their children. But how many?

Current estimates are that about 30% of unwed mothers keep their children. This suggests that approximately 3800 children were born to unwed mothers in 2005. Yet at times we have been told it is more like 20,000 a year.

The statics given to us which come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rom 2004 state that there were 4004 births to unwed mothers and 3,899 were adopted. This would suggest that 97% of mothers relinquished their children for adoption. This is puzzling.

It is not clear if there are statistics for how many children are relinquished but never adopted and who grow up in institutional care. Nor do there seem to be any statistics for women who try to raise their children alone, but eventually do give them up for adoption.

There also is an absence of demographic data. As the information itself is incomplete it is not possible to know the ages of women giving birth out of wedlock, nor other economic or social data about their lives. A small, nonrandom study conducted by *Aeranwon* found that 2/3 of the mothers were over 20, many had experienced abuse in their families, and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women were having a second and even third child without being married. This study did not collect information on the men who father these children.

As Dr. Boas mentioned, in a country with the 13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 fact that all Koreans must feel very proud of), it is not that Korea can't afford to support these women and their children.

Rather there seems to be other issues.

Much of this seems to rest on the experience of women in Korea. Although as I understand it abortion is not legal, Korea has a very high rate of abortion. It is estimated that at least 40% of abortions are to unwed mothers.

Korea has a very low birth rate, amongst the lowest in the world. Although as a foreigner, I am sure I don't begin to understand the social complexity this reflects, it does suggest that every child born in Korea be well nurtured and raised here, and that the decision to have children is a difficult one for many women and couples.

The social assistance provided to women and children, whether married or not, is much less in Korea then countries with similar sized economies in the west. There is very little financial assistance. Single parents can receive 50,000 won, but less then 10% do. There

is very little support for pre school, for job training, transportation, health care, and regular school tuition.

Korea's rating by OECD and UNDP gender equality measurements are surprisingly poor for a country with such rapid and successful development, in which so many women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in all fields of work and life.

In addition there is the already mentioned stigma of being an unwed mother. We have heard stories from women whose families rejected them, of fathers who abused their wives – blaming them for their daughter's pregnancy. There is enormous family and social pressure on unwed women to either have an abortion or to relinquish their children. That said, one of the interesting experiences I have had here over and over is that while Koreans say that other Koreans are against these women, every single Korean we have talked to has seemed sympathetic. Social change rarely occurs as rapidly as economic changes, but clearly there are tremendous social changes in Korea.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here was a similar, though not as strong, discrimination against unwed mothers in the past. However the last 50 years or more have seen dramatic changes in cultural norms and social policy. In many western countries today, women are supported with family leave when they have children, nutritional support, health care, job training, pre school related to their work hours or school hours, support to finish their own education if appropriate, housing assistance, and other needed social and financial supports. In many countries there are multi service centers, which provide many kinds of services for mothers, in one place. While the parents live on their own, they can access one or more programs, as they need. Increasingly western societies have supported women's rights to lead the lives they choose and learned that we can't afford not to take care of all of our children. And we are less concerned about the marital status of a mother, and more concerned about supporting her to be the best mother she can be.

In any case, in the United States, records are kept of all children born and it is possible to get precise numbers of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and what happens to them, how many children enter foster care each year and their ages and if they come from married or unmarried, parents, etc. Records are also kept on the fathers. In other words the data,

though never perfect, exists with which to examine these social phenomenon.

All of this suggests that the research KWDI is undertaking regarding the incidence and demographics of unwed mothers in Korea and the public opinions regarding these women and their children is critical. It is difficult to develop good public policy that can be accepted by the country, in the absence of important data.

Our focus today is on unwed mothers. However, we do understand that the circumstances for single mothers shares many similarities and that they have many of the same needs. So that good social policies for single mothers will also benefit unwed mothers and vice versa.

And while there is much to be done, we know that already there have been major changes. Due to the efforts of many within and outside of the government there have been important legislative changes providing more support for single parents and allowing women more legal independence in how they register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So I believe I speak for Dr. Boas and myself when I say that while there is much that Korea might do to improve the lives and circumstances of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there has already been significant improvements and important efforts begun. It is with a sense of hopefulness that we are part of this forum today. And I have a deep gratitude for your inclusion of us, foreigners, who truly wish only the best for Korea. While we know these issues have to be decided by Koreans, in your own time and way, we feel very privileged to be included in your deliberations. Thank you.

제47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